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123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13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2016. 10. 31. 별건 구속)

변 호 인

II. 공소사실

1. 피고인 및 주요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1975년경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1976년경 '구국봉사단',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으로 각 명칭 변경, 이하 '새마음봉사단', 총재는 당시 故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現 대통령)의 창립자인 故 최태민의 딸로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 재단')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주식회사 포스코,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등을 범한 사실로 201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하 '대통령')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처분 등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지휘권, 인사권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사실상 그 권한의 행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및 국정감사에서의 기업인 증인선정 등 국회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발언, 기업 방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2016. 12. 9. 국회에서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칙 등 헌법 규정과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범하여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현재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1991년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2. 12.경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되었고, 2016. 11. 4.부터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인 사람이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0.60%만을 보유하면서, 자신이 17.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를 통해 순환출자의 방식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고(2017. 1. 기준),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삼성그룹의 소위 '대관 업무' 창구 역할을 하면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간의 사업 및 투자 업무를 조정하는 미래전략실(2012. 12.경 '구조조정본부'에서 명칭 변경) 등을 통해 각 계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은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1986년경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1989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인 한국 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면서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 왔으며, 대통령이 1998. 4.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A○○가 비서로 활동하며 대통령을 보좌하였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과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2013. 1.경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6. 10.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을 통하여 국무회의 자료, 정부 주요 인사안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들을 건네받아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통령과 하루에도 수차례씩 수시로 직접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 駐 미얀마 대사 등 정부 고위직 인사 선정 및 대형 민간건설사 대표이사 임명, 민간 은행의 임직원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화, 체육 관련 이권사업, 정부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 1990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42-6에 있는 주택(이하 '삼성동 사저')으로 이사할 때 어머니 B○○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1998년경부터 직원을 시켜 삼성동 사저를 관리해 주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 관저 및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 해주었으며, 1998년경부터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고, 2013년경부터 약 4년간은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용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 의상실 직원 급여 등 약 3억 8,000만 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2013년경부터 대통령에게 청와대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하여 비공식적인 의료행위를 받게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대통

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뇌물수수 시점을 전후로 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

(1) 뇌물수수 시점을 전후로 한 이재용의 현안

(가) 개 요 : 이재용의 '승계작업' 추진

이재용은 1996년경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99년경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함으로써 아버지 C○○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비교적 소액의 자금으로 C○○ 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임직원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도움⁵⁸⁾을 받아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이재용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비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순환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재단 활용 등을 이용하여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4. 5.경 C○○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보다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순환출자를 활용한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이재용은 다른 주요 정치세력들과 비교하여 親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이후에는 승계작업을 성공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 합병 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제일모직·삼

58) C○○ 회장과 D○○ 부회장은 200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C○○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D○○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C○○ 회장은 2009. 12. 29.에 D○○ 부회장은 2010. 8. 15.에 각각 특별사면 되었음

성물산 합병 →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위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한편, 이재용은 C○○ 회장 세대의 반도체와 휴대전화 사업의 뒤를 이을 삼성그룹의 신수종(新樹種) 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2015. 5.경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삼성그룹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왔다.

(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 집단에게 소위 '맞춤형'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이유로 많은 반대에 직면하여 왔다. 이재용은 위 (가)항에 기재한 구체적인 승계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4. 7. 16.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2012. 9. 26.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발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인 면담 시 삼성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개진하게 하는 등 정부 측을 상대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을 통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희망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입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을 2013. 5.경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2014. 2.경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각각 포함시켜 추진해 왔고, 2016. 1.경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 업무보고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도록 하였고,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

합병에 반대하였고, 2015. 6. 24. 위 합병과 유사한 사안인 'SK C&C 주식회사와 SK 주식회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반 의결권 행사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미래전략실 실장 최지성, 차장 장충기는 2015. 7. 초순경 미래전략실 임직원 등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의 동향을 파악하고, 삼성물산 주주 등을 접촉하여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수형은 2015. 7. 4.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합병 찬반 동향을 파악하여 장충기에게 수시로 보고하였고, 2015. 7. 초순경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E○○, 삼성물산 대표이사 F○○은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 부회장 G○○을 5회 만나 "합병에 찬성해 주면 별도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등 미래전략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삼성물산 주주들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하여 2015. 6. 말경, 정치권이나 행정부처가 개입하여 '국민들의 노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독립성에 반하는 방식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안종범 수석과 H○○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6.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로부터 적정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 : 0.95(삼성물산)'이므로 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도 적정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 : 0.42(삼성물산)'이라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으며,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라스

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도 위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고,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 합병 비율을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으로 계산⁵⁹⁾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식 11.21%,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 제시한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⁶⁰⁾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찬반 결정을 위해서 'SK C&C 주식회사와 SK 주식회사 간 합병 안건' 처리 전례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위 합병 안건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⁶¹⁾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론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2015. 7. 초순경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남권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전문위원회의 반발을 묵살하고 홍완선 본부장 등에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되고 소관부서에서 올린 안건이 대부분 부서 의견대로 의결되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2015. 7. 10. 홍완선 본부장은 문형표 장관의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될 손해(최소 1,388억 원)를 상쇄할 수 있는 2조 원 이상의 시너지가 합병 후 법인에 생긴다는 내용으로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회의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59)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은 ① 처음에는 1(제일모직) : 0.64(삼성물산)로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할인율(25%) 대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할인율(41%)을 적용하였고, ② 기업의 영업 가치를 산정할 때 삼성물산은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률)을 적용하고, 제일모직은 EV(Enterprise Value, 기업 총가치)/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를 적용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③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에 대하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산정한 가장 낙관적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1:0.46 합병비율 역시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보기 어려움

60) 이러한 분석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합병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임

61) 문형표 前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2017. 1. 16. 구속 기소되었음

근거로 투자위원회에서 위 합병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7.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불법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됨에 따라 최소 8,549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위 합병에 대하여는 소액 주주,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⁶²⁾을 통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 준 것이라는 취지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합병 등기 후 6개월 내에 위 합병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상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하여 삼성그룹 계열사가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이재용은 2015. 5. 하순 ~ 7. 초순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으로 인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신규 순환출자 고리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인해 합병을 성사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이재용은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박상진으로 하여금 2015. 7. 10.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엘리엇과 같은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 간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간 인수합병

62) 2017. 1. 31. 삼성물산 주가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매매손과 평가손을 합산한 총 손실액은 8,638억 원임

(M&A)을 활성화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이하 ‘원샷법’, 2015. 7. 9.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의 대량보유 시 금융위원회 등 보고의무 강화(영국, 독일과 같이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 주식 기준을 5%→3%로 강화, ‘보유 목적’ 관련 금융위원회 실무 매뉴얼 구체화 등) 및 엘리엇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안종범 수석은 박상진의 건의에 대하여 “5% 지분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 문제는 검토를 할 예정이고, ‘원샷법’은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재용은 그 외에도 장충기를 통해 전경련으로 하여금 언론 및 공청회 등에서 엘리엇 사안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을 돕기 위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 및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장하게 하였고, 특히 2015. 7. 25. 대통령과 단독 면담 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개입 등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2015. 7. 27. 안종범 수석에게 엘리엇 사태 등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의 유출 및 경영권 방어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후 2016. 2. 4. 새누리당의 주도 하에 ‘원샷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은 2016. 2. 11.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하여금 엘리엇의 대리인 A□□□□ 前 주한 미국대사 면담 시 엘리엇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2. 24. 엘리엇의 5% 보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6. 5.경 위와 같은 5% 보고의무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문제

2015. 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발표 이후 위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그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된 삼성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 중이던 삼성물산에 대해 이재용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총량이 줄어들게 될 우려가 있었고,⁶³⁾ 이에 이재용은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 전인 2015. 6.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그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위 (사)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5. 7. 1. 엘리엇 측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되어 공정거래법상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위 합병으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의 발생 여부 및 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이재용의 입장에서 승계작업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박상진은 2015. 7. 10. 위 (사)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안종범 수석에게 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를 삼성 측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재용은 2015. 7. 24.부터 2015. 9. 29.까지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6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부서인 경쟁정책국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삼성 측의 입장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등 3개월 이상의 검토 끝에 2015. 10.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63) 2015. 12. 2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16. 2. 25.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중 130만 5,000주(약 2,000억 원 규모)는 이재용 자신이 매입하고, 200만 주는 이재용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매입하였음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하여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 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500만 주, 합계 1,000만 주를 2016. 3. 1.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I○○,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J○○, 공정거래위원장 K○○이 순차 결재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고, 다음날인 10. 15. L○○ 삼성전자 상무 등 삼성 측 담당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0. 15.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도록 요구하여 이를 삼성 측에 문서로 통보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 11. 5. L○○ 상무 등 삼성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000만 주 처분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2015. 11. 중순까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블록딜(Block Deal) 방식으로 매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대로 이행하겠으니, 공식 통보만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2015. 11. 17. E○○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J○○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일식집에서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한 1,000만 주는 너무 많다. 삼성전기 부분(500만 주)은 수용하겠는데, 삼성SDI 부분(500만 주)은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무렵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M○○은 J○○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삼성 측에서 종전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후 J○○ 부위원장은 E○○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검토 상황, 일정, 검토의 주안점 등 대상기업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E○○과 M○○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2015. 11. 18. 담당 부서인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사무관 N○○를 불러 처분주식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그 후 2015. 11. 20.과 11. 27. O○○ 국장, 기업집단과장 P○○, N○○ 사

무관이 11. 30. 공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공식 통보 연기는 불가능하니 즉시 삼성 측에 기존에 결정된 내용을 공식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J○○ 부위원장에게 보고하자, J○○ 부위원장은 “삼성전기 부분(500만 주)은 적용제외로 보아야 하고, 1,000만 주로 삼성에 공식 통보는 절대 안된다. 너희가 위원장이냐”라고 말하며 경쟁정책국장 이하 실무진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설명자료를 검토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쟁정책국장 이하 실무자들은 이와 같이 이미 최종결정권자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결재하여 삼성 측에 통보까지 끝낸 유권해석을 이해관계자인 삼성 측의 청탁과 청와대의 요구로 번복하는 전례 없는 무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향후 문제될 소지가 크므로 실무자들이 정당하게 행동한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 국장은 11. 27. K○○ 위원장을 찾아가 “실무자들의 의견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P○○ 과장은 그 무렵 N○○ 사무관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일지로 정리해 두라”고 지시하였으며, N○○ 사무관은 10. 14.부터 12. 23.까지의 위 사안 관련 결재 상황, J○○ 부위원장, K○○ 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 M○○ 비서관, Q○○ 행정관 등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들, 삼성전자 L○○ 상무, 미래전략실 E○○, R○○ 전무 등 삼성 측 관계자들의 말과 행동 등을 ‘일지정리’라는 제목으로 일자별, 주요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용은 2015. 12. 19. 장충기로 하여금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에 관한 삼성 측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관철시켜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2. 20. 위와 같은 J○○ 부위원장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기존에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바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0만 주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정하여 삼성 측에 통보하여 시행하겠다고 청와대 경제수

석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그러자, 같은 날 Q○○ 행정관은 N○○ 사무관에게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 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요구하였고, 2015. 12. 21. M○○ 비서관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500만 주만 처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J○○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 주로 줄여줄 방안이 없느냐”고 삼성 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같은 날 J○○ 부위원장은 그러한 M○○ 비서관의 요구에 따라 N○○ 사무관 등을 불러 “900만 주를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였고, 2015. 12. 22. 삼성 측 요구대로 500만 주만 처분하는 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시 N○○ 사무관에게 지시하여 당초 처분대상 주식규모가 ‘900만 주’ 단일 결론으로 되어 있던 보고서를 변경하여 처분대상 주식 규모를 ‘1안(900만 주), 2안(500만 주)’로 하여 결론을 정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그 보고를 받은 K○○ 위원장은 1안(900만 주)으로 가면 정부(청와대)와 결끄러워져 조직에 부담이 되고, 2안(500만 주)으로 가면 국회와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M○○ 비서관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빨리 500만 주로 결정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시 J○○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안종범 수석이 공정거래위원장이 2안(500만 주)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주 역정을 낸다. 상황이 좋지 않다. 형님이 위원장님한테 2안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라고 청와대의 뜻을 따르도록 압박하였다. 그에 따라 J○○ 부위원장은 M○○ 비서관의 말을 K○○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2안으로 결정하라고 설득하였고, K○○ 위원장은 2015. 12. 23. J○○ 부위원장을 통해 본건과 관련한 S○○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들은 후 결국 2안(삼성SDI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처분)으로 결재하여 삼성 측에 공식 통보하고 외부에 공개하였다.

(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이재용은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삼성생명을 투자부문(지주)과 사업부문(생명)으로 인적 분할하고 삼성생명의 자산 약 11조 원(금융계열사 지분 약 5조 9,000억 원, 삼성생명 자사주 약 2조 1,000억 원, 현금 약 3조 원)을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한 후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금융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가 개인자산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두 배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등 새로 설립될 금융지주회사 지분 약 45.78%를 보유하여 금융계열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권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마련한 후, 2016. 1. 중순경 기획재정부 출신인 미래전략실 T O O 전무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은밀하게 사전 검토 요청을 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전환계획 승인이 필요한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같이 은밀하게 사전 검토 요청을 받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환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는바, 2016. 1. 28. 언론에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자, 삼성 측과 협의를 하여 삼성 측으로부터 금융지주 전환계획을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하였고, 삼성 측은 이러한 전환계획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전달하였다.

그 후 2016. 2. 14.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을 통하여 삼성 측이 제출한 전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약 5조 9,000억 원을 삼성 측 희망대로 5년 내 단계적으로 매각을 허용할 경우 유배당계약자 배당이 전혀 없어 삼성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② 삼성생명이 보유한 현금 3조 원을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여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입할 경우 보험회사의 현금을 계열사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보호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보험계약

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이용하여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강한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은 도저히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U〇〇가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을 T〇〇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V〇〇가 청와대로 찾아가 안중범 수석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후 아래 다. (1)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2. 15. 이재용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단독 면담 직후 안중범 수석에게 이재용의 요청을 전달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잘 챙겨볼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금융위원회에서는 삼성 측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해 재검토하였음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여, 2016. 3. 13.에는 V〇〇 부위원장이 다시, 일주일 뒤인 3. 20.에는 금융위원장 임종룡이 각각 삼성 측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참하고 청와대로 찾아가 안중범 수석에게 삼성 측의 위 전환계획을 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에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삼성 측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수차례 전달하였음에도, 이재용은 미래전략실 전무 T〇〇, 삼성생명 부사장 W〇〇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추진 의지가 강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융위원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삼성에서는 원안대로 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 3. 29. 삼성 측의 전환계획 추진 사실이 발표될 경우 큰 비판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6. 4. 13.로 예정된 총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도록 W〇〇에게 권고하였으며, 삼성 측은 2016. 4. 11.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의사

를 전달하였다.

(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성공,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이재용은 '바이오 사업'을 삼성그룹의 신수종(新樹種)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그룹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자신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추진해 왔으나, 그룹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적자 기업은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상 요건 때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15. 11. 5.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년 영업이익 30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하였고, 2015. 12. 21. 대통령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이재용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바이오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재용은 2016. 2. 15. 대통령과 단독 면담 시 대통령에게 2015. 12.경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원료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환경부의 등록을 면제해 주어 2016. 2.경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이 상업가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바이오사업 공장 단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바이오사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후 2016. 2. 15. 및 2. 21. 두 차례에 걸쳐 이재용의 요청을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삼성 등으로부터 규제 리스트를 받아 환경부가 검토하게 하는 등 잘 챙겨볼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2016. 3. 2. 한국거래소는 위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상장 심사 기준을 발표하였으

며, 2016. 3. 3. 국가기술과학심의회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2016. 5. 7. XOO 환경부장관이 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방문하였으며, 2016. 11. 1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경된 상장 심사 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⁶⁴⁾ 현재 바이오특별위원회는 바이오사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환경부는 바이오사업에 대한 화평법 적용 제외 등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가) 메르스 사태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

2015. 5.경부터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삼성서울병원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삼성그룹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2015. 6. 23. 이재용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였음에도 비난 여론이 지속되자 이재용은 장충기를 통해 감사원 임원 출신 고문 등을 동원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된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후 대통령은 2015. 7. 25.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시 이재용에게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였고, 2015. 7. 28.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2015. 9. 10.부터 감사에 착수하여 2016. 1. 14.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특별검사 수사 개시 후인 2016. 12. 26. 비로소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2017. 2. 1.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재용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64) 위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 개정 후 적자 기업이 상장 심사에 통과한 수혜 사례는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함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 인수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사법당국의 수사 및 재판 등을 겪은 이재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승계작업을 위하여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 정부 정책당국의 협조, 필요한 법령의 입법, 불리한 입법 저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막강한 입법참여권, 대통령의 연설,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정책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권의 행사를 통해 반영되는 대통령의 입장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승계작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자 등 민간 시장 참여자들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드러나는 입장, 대통령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정부기관의 입장 및 행정부 발의 입법이나 여당을 통한 관련 법률 입법 진행 경과 등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여부 등을 통하여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성공 가능성, 일정 등을 예측하고 투자결정 등에 반영하는 등,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의 성공 여부에 큰 변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재용은 승계작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직접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미래전략실 간부 등을 통해 정책·규제 당국자들과 청와대 참모진을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 경제 관련 여론주도층에게 도움을 부탁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한 요망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왔으며, 대통령도 2014. 6.경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COO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로부터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챙겨 이재용에게 승계

작업 등과 관련 현안들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언론 보도 및 대통령과 국정운영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재용의 위와 같은 계획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도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정책 방향이 민간 분야에 영향을 끼쳐 주식시장 등에서 이재용의 계획에 우호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야 했고, 반대로 대통령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승계작업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재용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다. Y○○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 대통령, 이재용 간 뇌물수수 합의 과정

(가) 2014. 9. 15.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피고인은 2013. 4.경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한 자신의 딸 Y○○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과 위 대회 심판들에 대해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3. 7.경 대통령에게 문체부 담당자로 하여금 Y○○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Z○○를 만나 대한승마협회의 비위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대통령이 모철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나, 문체부 담당자 A△△ 등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Z○○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 내용에 불만을 갖게 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에게 A△△ 등에 대한 공개적 좌천 인사를 지시하였으며, 2013. 10.경 피고인의 추천을 받은 김종을 대한승마협회를 감독하는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과 피고인은 Y○○가 승마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한승마협회 등에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14. 3.경 Y○○가 승마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되자 2014. 4.경 “비선실세 피고인, A○○의 딸 Y○○가 승마 국가대표에 부당하게 선발되었다”는 소위 ‘공주 승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⁶⁵⁾ 2014. 9. 초순경 피고인은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한화그룹이 Y○○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삼성그룹으로 바꾸어 Y○○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그 전부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에게 C○○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에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Y○○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피고인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을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하면서 Y○○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위 나. (1)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향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 및 제일모직 상장 심사 등 승계작업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및 Y○○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65) 당시 Y○○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A○○와 피고인의 딸이라는 사실은 대한승마협회 등 승마 관련 자들이나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

(나) 2015. 7. 25.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⁶⁶⁾

대통령이 위와 같이 2014. 9. 15. 이재용에게 Y○○의 승마 관련 지원을 요청한 후 삼성그룹 측에서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위하여 2014. 11.경 B△△ 삼성전자 상무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내정하는 등 준비를 하였고, 대통령은 2015. 1.경부터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종 차관에게 Y○○에 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특히 김종 차관에게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삼성 측에 연락을 하여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Y○○의 예상치 못한 임신과 가출 등으로 인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5. 5. 8. Y○○가 출산을 하자 삼성그룹으로부터 Y○○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10. Z○○로 하여금 Y○○ 등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말 구입 등의 비용으로 약 235억 6,4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박상진에게 보고하게 한 후, 2015. 6. 30. Y○○를 독일로 출국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비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실제 지원이 늦어지자, 2015. 7.경 삼성그룹 소속 대한승마협회 임원 B△△, C△△이 Y○○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B△△, C△△을 D△△ 제일기획 사장의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고가의 말 구입 및 독일 전지훈련 비용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Y○○를 지원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재용에게 Y○○를 위한 승마 관련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피고인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66) 2015. 7. 25.에는 Y○○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 외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음

대통령은 2015. 7. 25.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소위 '안가'에서 이재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안하고 있다. 삼성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B△△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총무이사 C△△은 지방색이 있어 문제가 많으니 D△△ 제일기획 사장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말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하여 이재용이 희망하는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현안을 대통령과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Y○○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위 나. (1) (바)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사례를 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계작업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Y○○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2016. 2. 15.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⁶⁷⁾

피고인은 2016. 1.경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Y○○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말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와 같은 요청을 수락한 대통령은 2016. 1. 12. 안중범 수석에게 지시하여 이재용 및 박상진으로

67) 2016. 2. 15.에는 Y○○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 외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음

하여금 Y○○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고가의 말을 구입해 주는 등 Y○○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2.경 대통령에게 이재용이 그동안 Y○○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해주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이재용이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 2015. 12.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계열사 간 주식 처분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최소화하는 등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하여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도와준 점 등을 이용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Y○○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오후 소위 '안가'에서 이재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이재용에게 "Y○○를 잘 지원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Y○○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위 나. (1) (아)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전 결정을 번복하고 이재용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해 준 점에 대해 사례를 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위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향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엘리엇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삼성그룹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바이오 신산업 분야 회사인 삼성바이로직스의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Y○○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과정

(가) 2014. 9. ~ 2015. 7.경 뇌물수수 과정

이재용은 2014. 9. 15. 위와 같은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최지성, 장충기에게 지시하여 2014. 11.경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B△△ 삼성전자 상무를 내정하고, 2014. 12.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박상진을 내정하였으며, 그 무렵 장충기는 ‘승마인의 밤’ 행사에 Y○○가 참석하지 않게 하여 소위 ‘비선실세’ 논란에 따른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Y○○를 특별히 관리하였다.⁶⁸⁾

대통령은 2015. 1.경부터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종 차관에게 Y○○에 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특히 김종 차관에게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삼성 측에 연락을 하여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Y○○가 2015. 5. 8. 아들을 출산한 후 본격적으로 승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Z○○, □□□에게 지시하여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해 Y○○를 포함한 승마선수에게 ‘삼성그룹의 부담으로’ 말 구입비용 등 합계 약 235억 6,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한국승마증장기로드맵’을 작성하여 2015. 6. 10. 박상진에게 보고하게 하였고, 2015. 6. 22. Z

68) 2014. 11. 말 ‘피고인의 남편 A○○와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국정 중요 사안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검찰 수사까지 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당시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E△△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피고인이 1위, A○○가 2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는 등, 피고인이 소위 비선실세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었음

○○를 독일로 가게 하여 Y○○의 승마훈련 및 정착 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박상진은 2015. 6. 24. 피고인의 측근인 김종 차관을 만나 'Y○○가 최근 출산을 하여 삼성에서 승마훈련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Y○○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곧바로 삼성에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달하여 이재용이 위 (1)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뇌물수수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나) 2015. 7. ~ 2016. 10.경 뇌물수수 과정

피고인은 2015. 7.경 대통령에게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2015. 7. 중순경 안중범 수석을 통하여 이재용에게 대통령이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안중범 수석은 2015. 7. 21.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일자를 2015. 7. 25.로 확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통보받은 이재용은 대통령이 단독 면담 시 Y○○에 대한 지원 상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하고 2015. 7. 23. 이재용 본인 주재로 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박상진으로부터 Y○○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그때까지 Y○○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⁶⁹⁾

이재용은 2015. 7. 25. 위와 같은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재용으로부터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박상진은 다음 날인 2015. 7. 26. B△△에게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하고 마장시설, 'Y○○'이 훈련도 보고 관련 '컨설팅회사'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Z

69) 박상진은 2015. 7. 23. 이재용과 회의를 한 직후에 김종찬을 통해 Z○○의 독일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다음 날인 7. 24. B△△에게 Z○○와 통화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B△△은 Z○○에게 전화하여 박상진이 독일에 직접 가겠다고 말하였음

○○에게 연락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⁷⁰⁾ 2015. 7. 27. 이재용, 최지성, 박상진은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F△△와 함께 회의를 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재용에게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직원인 B△△, C△△을 D△△의 직계 임직원인 황성수, G△△로 각각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Z○○에게 박상진이 Y○○ 승마 관련 지원을 위하여 연락을 할 것이니 만나 보라는 지시를 하고,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Z○○는 2015. 7. 29. 독일로 찾아온 박상진을 만나고, 2015. 8. 초순경에는 독일로 찾아온 황성수를 만나 피고인이 독일에 준비할 컨설팅회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협의하였으며, 2015. 8. 25. 100% 자기 자금으로 인수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마인제959'를 코어스포츠(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등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5. 8. 26. Z○○, 코어스포츠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H△△, 박상진, 황성수가 만나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선수단 지원 및 장비 구입/임차, 대회참가비 및 인건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이재용으로부터 받기로 한 Y○○의 승마 관련 지원을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재용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5. 9. 14. 10억 8,687만 원(81만 520 유로), 2015. 12. 1. 8억 7,935만 원(71만 6,049 유로)을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18만 6,887 유로), 2015. 10. 21.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대금 7억 4,915만 원(58만 유로),⁷¹⁾

70) 당시는 위 '컨설팅회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었음

71) 당초 위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말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표시되었는데, 2015. 11.경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Z○○에게 "이재용'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 준다고 했냐, 왜 말 여권에 소유주를 삼성이라고 적었냐?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박상진을 직접 질책하기 위해 독일로 소환하자 박상진은 Z○○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급히 사과하

2015. 11. 13.경 위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 유로), 2015. 12. 14. 말 수송차 구입대금 2억 5,890만 원(20만 유로)을 마주 등에게 송금하게 하여 말, 차량, 말 구입 관련 부대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경 Z○○와 사이가 나빠져 Z○○가 귀국해 버리자 박상진에게 직접 만나서 지원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구하여 2015. 12. 31.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박상진과 황성수를 만나 지원 문제를 협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독일 현지, 위 그랜드하얏트 호텔 등에서 한 달에 1회 가량 박상진 등을 은밀하게 만나 Y○○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에는 대통령에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말을 이재용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대통령은 2016. 1. 12.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안중범 수석을 통하여 이재용에게 전달했고, 이재용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2. 4. 박상진, 황성수 등으로 하여금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와 라우싱1233(Rausing 1233)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V : 150만 유로, 라우싱1233 :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을 마주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 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 2. 초순경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에게 Y○○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2016. 2. 15.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Y○○의 승마 관련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재용은 박상진 등으로 하여금 2016. 3. 24. 9억 4,340만 원(72만 3,400 유로), 2016. 7. 26. 7억 2,522만 원(58만 유로)을 피고인이 지정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송금⁷²⁾하게 하였

였고, 위 살시도의 패스포트 상 소유주를 중개인인 I△△△△로 다시 바꾸고, 그 후 구입한 말들은 패스포트 상 소유주를 '삼성'으로 하지 않고 매도인 측 소유로 남겨두었음

72) SK그룹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2016. 2. 29. 펜싱 등 케이스포츠 재단의 해외전지훈련 지원 명목으로 89억 원을 위 비텍스포츠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독일에 있는 비텍스포츠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세법 등 여러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

고, 2016. 2. 19. 위 비타나V와 라우싱1233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 7,000 유로)을 납부하게 하여 위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경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때 박상진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에게 박상진에 대하여 특별히 YOO 승마 관련 지원에 대하여 고맙다는 뜻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통령은 2016. 5. 하순경 에티오피아 국빈 방문 시 만찬장에서 박상진을 대통령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게 하는 전례 없이 파격적인 예우를 하고, 박상진에게 직접 악수를 청하면서 “승마 등 지원을 해 주어 감사하다.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싶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박상진에게 “악수는 잘 하셨나?”라고 확인을 하기도 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⁷³⁾의 대가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합계 36억 3,484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추가로 합계 41억 6,251만 원을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 대통령, 이재용 간 뇌물수수 합의 과정

(가) 2015. 7. 25.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피고인은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

73) 피고인과 대통령의 YOO에 대한 승마 관련 금품 수수 범행은 형법 제129조에 따른 뇌물수수 범행임. 다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더하여 공여자인 이재용의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까지 존재함

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조카 장시호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김종 차관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하 '영재센터')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대통령과 이재용의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가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장시호와 함께 만든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고, 대통령은 위 나. (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소위 '안가'에서 위 다. (1)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재용에게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 제일기획 D△△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라고 말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2016. 2. 15.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피고인은 2016. 2. 14. 대통령과 이재용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장시호를 시켜 급히 만든 영재센

터 사업 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고, 대통령은 위 나. (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소위 '안가'에서 위 다. (1) (다)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에게 "영재센터에 추가로 후원을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과정

피고인은 2015. 7.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고, 대통령은 2015. 7. 25.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에서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재용은 같은 날 최지성, 장충기, D△△ 등에게 그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장시호에게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에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였는데 장시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위에다 한 번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재차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2015. 8. 9. 안종범 수석에게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D△△은 2015. 8. 20. 피고인의 측근인 김종 차관을 만나 영재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 2015. 8. 21. 영재센터 전무이사 J△△을 만나 구체적인 영재센터 지원방안을 협의하였고, B△△은 2015. 9. 23. ~ 24.경 영재센터 직원들을 만나 영재센터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장충기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2015. 10. 2. 삼성전자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이에 2016. 2. 15.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에서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재용은 같은 날 최지성, 장충기에게 위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장충기로부터 이재용의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 지시를 전달받은 D△△, B△△은 2016. 3. 3. 삼성전자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으로 하여금 제3자인 영재센터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마.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 대통령, 이재용 간 뇌물수수 합의 과정

(가) 2015. 7. 25.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피고인은 2015. 5.경 대통령에게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 하되 출연기업들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대통령은 위 나. (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

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승낙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 MOO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2015. 7. 하순경 '문화와 체육 분야의 두 개 재단법인의 초기출연금 규모는 각각 300억 원 수준으로 출범하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진, 한화, 두산, CJ 등 대통령이 지정한 10개 그룹에서 하나의 재단법인에 30억 원씩 출연하여 설립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단 그룹간 출연규모 차등여부 등은 추후 검토하며, 재단 설립 후 사업재원은 ① 출연금 이자수익, ② 정부 재정지원, ③ 대기업(법인) 및 기업 임원(개인)의 기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하여 이재용을 포함한 7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소위 '안가'에서 위 다. (1) (나)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에게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하라"고 말하여 향후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2016. 2. 15. 이재용과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면담

대통령은 2015. 7. 24. ~ 7. 25. 이재용을 포함한 7개 그룹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난 후 안종범 수석에게 위와 같이 10개 그룹에서 출연하여 두 개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가 되었으니 전경련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안종범 수석은 2015. 7. 하순 ~ 8. 초순경

전경련 K△△ 부회장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 이후 재단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은 2015. 10.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핑계 삼아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문화재단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은 안중범 수석에게 “재단 설립이 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재단 설립 절차 진행을 재촉하였으며, 안중범 수석은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를 K△△에게 전달하면서 M○○ 비서관을 통하여 삼성그룹을 포함한 9개 그룹을 재단 출연 기업으로 특정하여 알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문화 관련 재단법인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고 위 재단 이사장 ‘L△△’, 사무총장 ‘M△△’, 이사 ‘N△△’ 등 재단법인 임직원을 내정하여 대통령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으며, 대통령은 안중범 수석에게 재단 명칭 및 이사진 명단을 알려주었고, 2015. 10. 23. 안중범 수석은 M○○ 비서관을 통해 이를 전경련 측에 전달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그대로 반영하게 하였고, 대통령은 위 나 (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소위 ‘안가’에서 위 다. (1) (다)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에게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에 협조해 주어 고맙다.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포함하여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하여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재단설립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과정

피고인과 대통령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대통령은 2015. 7. 25. 이재용과 단독 면담에서 재단 설립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2015. 7. 25.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후에 최지성, 장충기에게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문화, 체육 관련 재단 설립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후 안종범 수석에게 전경련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경련 K△△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였으며, K△△은 2015. 8. 중순경 O△△ 전무를 통하여 최지성, 장충기에게 “안종범 수석이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하니 전경련에서 두 재단에 각각 300억 원씩 모금을 해 달라”고 한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말했던 사안이다”라는 말을 전달하였고,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하던 전경련의 O△△ 등은 2015. 10. 23. 재단 명칭이나 이사진 구성, 재단 설립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2015. 10. 27.까지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삼성그룹에서 105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최지성, 장충기에게 전달하였고, 2015. 10. 24.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갑자기 재단의 출연금 총액을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로부터 재단 규모를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지시에 따라 삼성그룹의 출연금도 125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을 최지성, 장충기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2015. 10. 26.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기존 9:1에서 2:8로 갑자기 변경되었다.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등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재단 임원진들은 발기인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 등 삼성그

룹이 재단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전혀 갖지 못하였고 향후 운영 과정에 관여할 의사도 전혀 없음에도, 2015. 10. 25. O△△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계열사별로 임의로 할당하여 2015. 11. 20. 삼성전자로 하여금 60억 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로 하여금 25억 원, 삼성물산으로 하여금 15억 원, 2015. 11. 25.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25억 원 등 임의로 선정한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125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미르 재단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2015. 12. 중순경 안종범 수석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지시하고,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경련에 재단 설립을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전경련의 O△△ 전무 등은 최지성, 장충기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총 300억 원 중 79억 원을 삼성그룹에서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5. 12. 2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명칭, 이사진 명단을 통보받아 재단설립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2016. 1.경 미르 재단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재단 임원진들은 발기인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삼성그룹이 재단법인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전혀 갖지 못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 관여할 의사도 전혀 없었음에도, 2016. 2.경 O△△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계열사별로 임의로 할당하여 2016. 2. 26.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30억 원,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10억 원, 에스원으로 하여금 10억 원, 삼성화재로 하여금 29억 원 등 임의로 선정한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79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대통령의 재단 공동 운영

(가) 미르 재단의 경우

피고인은 2015. 10. 27. 미르 재단이 설립된 후 자신이 구성한 이사진을 통하여 재단을 장악하고 '회장님'으로 통하면서 미르 재단의 운영 방향, 사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결정한 사항들을 N△△ 상임이사 등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2015. 11.경부터 '에꼴 페랑디-미르' 사업⁷⁴⁾, 2016. 2. ~ 3.경부터 'K-Meal 사업'⁷⁵⁾ 2016. 5. ~ 6.경부터 'K-Tower 사업'⁷⁶⁾ 등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미르 재단 관계자가 동행하여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을 진행하게 하거나 안종범 수석의 도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하게 하였다. 또한 재단 직원 채용 역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016. 6.경에는 M△△ 사무총장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을 통하여 L△△ 이사장에게 압력을 가하여⁷⁷⁾ M△△ 사무총장을 해임시키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2016. 1. 초순경 안종범에게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K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라고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미르 재단이 참여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안종범 수석은 2016. 1. 17. 아프리카 순방 등 K프로젝트 회의를 개최하면서 미르 재단의 M△△ 사무총장, P△△ 사무부총장 등을 참여하게 하였고, 이후 K프로젝트 TF를 구성하여 2016. 4. 25. 제1차 TF 회의를 포함한 TF 회의에 미르 재단 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하는 등 미르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적극 관여하였다.

(나) 케이스포츠 재단의 경우

피고인은 2016. 1. 13. 케이스포츠 재단이 설립된 후 자신이 구성한 이사진을 통하여 재단을 장악하고 '회장님'으로 통하면서 임직원의 연봉, Q△△

74)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학교인 프랑스의 에꼴 페랑디와 제휴해서 한국 내에 한식과 프랑스요리가 접목된 요리학교(페랑디-미르)를 만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

75)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에 영양식 개발을 의뢰하여, 이화여대에서 개발한 영양식을 아프리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 후원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

76) 이란에 한류를 전파하기 위한 건물 등을 마련하는 사업

77) 안종범 수석은 L△△ 이사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M△△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함

등 재단 직원 채용 문제, 태권도 시범단 창단 및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2016. 1.경 R△△와 Q△△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진행할 사업 계획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2016. 1. 하순경 한국형 선진 스포츠 클럽 문화 정착을 위한 K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 2016. 1. 말 또는 2. 초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기획안, 2016. 2.경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 계획안, 체육인재 해외 전지 훈련 예산안 등을 보고받았으며,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기업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대통령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6. 1. 30.경 안중범 수석에게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여 2016. 2. ~ 3.경 9개 그룹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는 과정⁷⁸⁾에서 SK 그룹 S△△ 회장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해외전지 훈련 명목으로 80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하였고, 롯데그룹 T△△ 회장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건립할 체육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으로 하여금 제3자인 미르 재단에 125억 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 등 합계 204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합계 36억 3,484만 원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추가로 말 구입 및 부대비용

78) 대통령은 2016. 2. 15. 삼성, 현대차, LG, 2. 16. GS, SK, 2. 17. 한화, 2. 18. KT, 2. 22. 포스코, 3. 14. 롯데 그룹 회장과 각 단독 면담하였음

명목으로 합계 41억 6,251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77억 9,73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으로 하여금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 재단에 125억 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220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피고인(승마)	영재센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합계
수수금액	77억 9,735만 원 (약속금액 213억 원)	16억 2,800만 원	125억 원	79억 원	298억 2,535만 원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사실은 위 2. 다.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의 승계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으로부터 YOO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재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 비용과 훈련에 필요한 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가 보유하는 것처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박상진, 황성수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ZOO, 박상진, 황성수와 함께 2015. 8. 26.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승마훈련 비용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만들거나 삼성전자가 자기 자산으로 말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YOO에게 줄 말 구

입비용 등을 제공받기 위해 삼성전자가 말을 소유하고 Y○○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9. 14. 삼성전자로부터 810,520 유로(한화 10억 8,687만 원)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79,686 유로(77억 9,735만 원)를 같은 방법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와 공모하여 위 2. 다.항과 같은 범죄로 인한 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⁷⁹⁾

나.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2016. 8. 22.경 '삼성에서 Y○○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말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고인과 이재용 등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Y○○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피고인과 Y○○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박상진, 황성수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라고 지시하였고, 박상진, 황성수는 2016. 8. 22. 삼성전자와 말 중개업자인 I△△△ 헬그스트란트(Andreas Helgstrand, 이하 'I△△△△')가 운영하는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Helgstrand Dressage A/S) 간에 "삼성전자가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1233'을 269만 100 유로에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Y○○는 위 말 3마리를 계속 보유하던 중 2016. 9. 23. 다시 언론에서 '비타나V'라는 말 이름을

79) 피고인과 박상진, 황성수는, 2016. 10. 19. 독일에서 만나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계약이 2016. 3. 31.자로 해지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은 독일 현지 자동차업종 회사를 새로 내세워 2016. 4. 1.부터는 마치 삼성이 아니라 그 독일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삼성과의 관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음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의혹 보도가 나오자, 피고인은 2016. 9. 28. 박상진과 황성수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비밀리에 만나 언론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말들을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 소유의 새로운 말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말 값 차액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고, 2016. 9. 29.에는 황성수, I△△△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밀리에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과 I△△△는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였다.⁸⁰⁾

또한, 실제로는 당초 삼성전자가 피고인에게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 1233'을 사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고,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와 피고인 사이에 새로이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는 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비텍스포츠 자금으로 말 값 차액을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에 송금하여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피고인이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와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말 판매대금을 실제로는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박상진, 황성수는 삼성전자에서 회계상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1233'을 매각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매매대금 채권을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허위채무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2016. 11. 초순경 2016. 8. 22.자로 계약일을 소급하여 삼성전자와 I△△△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GGA⁸¹⁾(Grønberg Gulvservice A/S) 간에 "GGA가 삼성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지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비용은 삼성전자가 GGA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9.자로 삼성전자와

80) I△△△는 '비타나V' 등도 판매한 중개상으로서, 피고인과 삼성 간의 관계와 '비타나V' 등 말들의 소유관계가 외부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피고인에게 교환해 주면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삼성 측의 의사 확인도 필요했으므로, 9. 29.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피고인, 황성수, I△△△ 3자 간에 직접 만나 합의를 하게 된 것임

81) 위 허위용역계약의 상대방인 GGA는 바닥재관리, 유지보수, 교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마크 현지 업체로 승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임에도, 헬그스트란트를 허위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경우 말 매매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삼성 측 요청에 따라 I△△△가 지정한 GGA를 허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한 것임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 간에 “삼성전자가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1233’ 등 말 3마리를 209만 유로에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삼성전자에서 I△△△△에게 지급하고, I△△△△는 그 돈으로 삼성전자에게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와 공모하여 위 2. 다.항과 같은 범죄로 인한 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대통령 등의 은행에 대한 직무 권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소관 행정 각부의 장에게 위임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은행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특히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나. U△△의 본부장 임명 강요

피고인은 2015. 8.경 이재용으로부터 Y○○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은행⁸²⁾ 프랑크푸르트지점에 피고인 본인 및 코어스포츠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지점장인 U△△를 알게 되었고, 이후 U△△로부터 예금 인

82) 2015. 9. 1. 하나은행과 한국의환은행이 합병하여 현재의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으로 출범

출·송금 등 예금관리 업무,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의 물색 및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피고인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U△△로부터 유럽에 하나은행 총괄법인이 생길 예정인데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한 후 U△△를 유럽 총괄법인의 법인장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외환 거래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통령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U△△를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5. 11. 6. 안종범 수석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였으며, 안종범 수석은 V△△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V△△ 부위원장은 W△△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U△△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 출범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U△△가 유럽 법인장으로 임명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말경 U△△를 국내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독일로의 해외송금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통령에게 U△△가 귀국하면 하나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W△△ 회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2015. 11. 말경 안종범 수석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U△△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안종범 수석은 V△△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V△△ 부위원장은 W△△ 회장에게 전화하여 "안종범 수석이 U△△

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말하였으며, W△△ 회장으로부터 12월말 정기 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하였는데, 2016. 1. 7. 하나은행 정기인사에서 W△△ 회장은 U△△를 본부장이 아닌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에 임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대통령에게 U△△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6. 1. 21. 안종범 수석에게 U△△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안종범 수석은 같은 날 전화로 W△△ 회장에게 “내가 U△△를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겠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까”라고 말하며 심하게 화를 냈고, W△△ 회장은 안종범 수석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한 후 2016. 1. 23. U△△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유재봉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지시하여 글로벌 영업 그룹장 밑에 1본부장과 2본부장을 신설하여 본부장급 자리 2개를 새로 만든 후 2016. 2. 1. U△△를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안종범 수석, V△△ 부위원장과 공모하여 대통령 등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에 가탁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W△△ 회장으로 하여금 U△△를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2.경 미얀마에서 코이카(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등 대한민국 공공기관 주도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에

게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駐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U△△로부터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 출신인 X△△을 駐 미얀마 대사 후보로 추천받아 그 무렵 대통령에게 X△△을 駐 미얀마 대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외교부에서 건의한 駐 미얀마 대사 후보를 배제한 채 2016. 3. 9. X△△을 신임 駐 미얀마 대사로 내정하였고, 아그레망(Agrément)을 거쳐 2016. 5. 23. X△△이 駐 미얀마 대사로 정식 임명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U△△로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임원 출신인 Y△△을 코이카 이사장 후보로 추천받아 그 무렵 대통령에게 Y△△을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외교부에서 건의한 코이카 전임 이사장 연임을 거부하고 외교부에 Y△△을 코이카 이사장 공모 후보자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후 코이카 이사장 후보 공모에 응한 Y△△을 2016. 5. 13.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에 있는 '선명 범무법인'에서, 주식회사 '미얀마인스펙션앤드테스팅서비스코리아'(MITS Korea, 이하 'MITS') 대표이사 Z△△으로부터,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투입하여 미얀마에 한인 타운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駐 미얀마 대사관, 코이카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Z△△이 미얀마 현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 등 한국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액수 미상의 MITS 주식 15.3%(총 3,060주)를 장시호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Ⅲ. 첨부

1. 체포영장 1부.
2. 변호인선임서 1부. 끝.

별지

범 죄 일 램 표

순번	일시	금액	범행방법
1	2015. 9. 14.	10억 8,687만 원 (81만 520 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계좌로 송금
2	2015. 10. 14.	2억 4,418만 원 (18만 6,887 유로)	YOO를 위한 선수용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3	2015. 10. 21.	7억 4,915만 원 (58만 유로)	YOO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4	2015. 11. 13.	8,217만 원 (6만 5,830 유로)	YOO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5	2015. 12. 1.	8억 7,935만 원 (71만 6,049 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계좌로 송금
6	2015. 12. 14	2억 5,890만 원 (20만 유로)	YOO를 위한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7	2016. 2. 4.	26억 6,882만 원 (200만 유로)	YOO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 라우싱1233(RAUSING1233)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8	2016. 2. 19.	1억 5,929만 원 (11만 7,000 유로)	YOO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 라우싱1233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9	2016. 3. 24.	9억 4,340만 원 (72만 3,400 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계좌로 송금
10	2016. 7. 26.	7억 2,522만 원 (58만 유로)	"
합계		77억 9,735만 원 (597만 9,686 유로)	